

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176호

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

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9월 7일

국토교통부 장관

[관리번호 물류-12호]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김영배

나. 전화번호 : 010-5618-5151

2. 명칭 : 택배차량용 소화물 인-아웃 장치

3. 내용요약

<분야> 하역

<기술의 요지>

소형 택배차량의 승하차 구조에서 택배 상자의 인-아웃시 적재되어 있는 택배상자의 안전한 전후 이동을 위한 이송판과 제품 결박기 구조를 설계하여 리모컨으로 적재 및 하역 작업을 가능케 하는 장치

<범위>

택배차량의 탑차 내에 설치되고, 모터의 구동에 의해 회전하는 스크류; 상기 스크류에 장착되어 좌우(또는 상하)로 이동되는 한쌍의 너트; 일단이 상기 한쌍의 너트에 각각 연결되고, 타단이 등받이에 각각 연결되어 접철되는 링크; 및 상기 탑차의 천정에 설치되는 가이드 레일에 이동 가능하게 연결되고, 상기 링크의 접철에 연동되어 전후 이동되어 소화물의 승차 및 하차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등받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장치

※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담당자

(031-389-6587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※ 신청기술등이 「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고시) 제 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호서식(이해관계 의견서)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

- | |
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·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2.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3.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|
|--|

- ※ 이해관계의견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(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)에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(우편 소인 날짜가 공고 종료일 이전인 경우만 접수 가능)으로 제출